

4-2-8 강사 임용 규정

(전부개정 2019.7.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예수대학교 정관 제36조 제7항, 학칙 제86조, 교원 인사규정 제3조 제7항에 의거하여 예수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 따라 교과목의 강의 등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임 용

제3조(임용권) 강사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1]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동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강사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사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③ 교원의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이 동일기간 내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종류만 인정한다.

④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자<신설 2019.12.21.>

제5조(임용일) 강사의 임용은 당해 학기 개시일 이전에 계약 시작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수능출제위원 위촉·징계·연구년(6개월 이하)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임용제한)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강사의 임용예정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는 본교의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8조(신규교원임용원칙) 강사의 신규임용은 제4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재임용원칙) ① 강사의 재임용은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3년까지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에 따른다.

② 전임교원이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임용된 강사의 경우 재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임용계약) ① 총장은 강사를 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2. 임금 및 그 지급 방법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6. 그 밖에 강사의 임용 또는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별지서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 학기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 계절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운영 등 교

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기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필요한 학기에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의 이유로 교과목이 미 개설됨에 따라 강의 담당하지 않게 되는 기간도 제1항 제1호가 정한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1조(인사발령) 강사의 임용에 있어서 발령과 함께 임용장을 교부한다.<개정 2019.12.21.>

제 3장 위원회 구성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총장은 강사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② 전공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교무처장과 해당 부서(이하 “교과목을 운영하는 전공, 학부, 부서”를 포함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서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하기로 하다.<개정 2023.1.10.>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3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사 신규임용예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심의 및 신규임용예정자 확정
2. 강사 재임용 추천자에 대한 심의 및 재임용 여부 결정
3. 강사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한 심의 및 재임용 거부 결정
4. 기타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대한 중요 사항 심의
5. 기타 강사 관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4장 신규채용

제14조(채용방법)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제4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수능출제 위원 위촉·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강사 임용예정자가 학기 개시일 전 1개월 이내에 임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없거나, 기 임용된 강사의 해당교과목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공고, 기초·전공·면접심사, 해당 부서 심

위원회 추천, 교원인사위원회 검증·심의 등 신규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제 9조에서 정한 재임용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9조에서 정한 재임용절차를 보장한다.

제15조(채용절차) ① 강사의 신규채용 절차는 해당 부서의 강사충원계획서 접수, 계획수립 공고, 서류접수, 심사,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매 학기 시작 3개월 전에 교육과정, 학부의 운영 계획 등에 따라 강사 채용분야와 인원을 확정하여 교무처 수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하며, 교무처장은 강사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총장은 강사임용계획 확정 후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접수마감일 전 7일 이상 대학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14조 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채용 제출서류) ① 강사 신규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강사 임용지원서 1부
2. 석·박사 학위 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최근 4년간 대표 연구실적 1부<개정 2020.6.9.>
5. 모집분야 교과운영계획서 1부
6. 자기소개서 1부
7. <삭제 2019.12.21.>

제17조(전형방법) ① 강사의 공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심사 전형을 거쳐 실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심사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제4조의 강사 임용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2. 기초·전공심사 : 전공영역의 적합성, 학력, 대학 강의 경력, 연구실적, 교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교육자적 자질, 학교발전 기여 가능성
<개정 2020.6.9.>
3. <삭제 2020.6.9.>
4. 면접심사 : 강사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 심사에 관한 평가 배점 비율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90%, 면접심사 비율 10%로 정한다. 단, 면접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점수를 100%로 환산한다.

③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④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선발방법) ① 기초 및 전공심사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전체 평균한 것을 취득점으로 한다.<개정 2023.1.10.>

② 면접심사 평가 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9조(최종선발예정자 선정) ① 최종선발 예정자는 기초·전공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단,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0.6.9.>

②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대학 강의 경력<개정 2020.6.9.>
2. 면접평가점수
3. 연령순(연소자)

③ 심사위원장은 최종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최종 평정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70점미만의 자로 평가된 채용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연 부적격 처리하며, 적격자로 판정된 채용후보자는 그 명단과 관계서류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그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채용분야별 최고득점자 1명을 강사 임용예정자로 확정한다.

제20조(임용 및 보고)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강사 임용예정자를 강사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강사 임용이 확정된 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은 강사 임용 사항을 관할청에 임용 후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인사서류 제출) ① 임용이 확정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부
3. 학위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각 1부
5. 기본증명서 1부
6. <삭제 2020.6.9.>
7.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8.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1부
9. 그 밖에 총장이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거짓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총장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장 재임용

제22조(재임용 시기) ① 강사의 재임용 시기는 매 학기 개시전 년 2회 실시한다.

제23조(재임용 절차) 총장은 강사 재임용 대상자를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무처를 통해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 절차를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재임용 신청) ① 재임용을 원하는 강사는 만료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임용 서류 미제출 강사는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재임용 심사) ① 제24조 제1항에 의한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서식에 따라 각 호 내용을 교수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개정 2020.6.9.>

1. 수업계획서 기간내 입력 10점 (기간내 미 입력시 강좌당 3점 감점)
2. 수업일수 준수 및 출결관리 : 10점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3. 휴강 및 보강 준수 : 10점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4. 수업평가 점수 : 60점
5. CQI 보고서 : 10점

② 교수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수평가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강사는 10일내에 교수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진술 등 소명을 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④ 교수평가위원회는 강사가 기준 미 충족 등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5.>

제26조(재임용 거부)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교수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미만인 경우
2. 해당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3. 동 규정 제7조 임용제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강사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별지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2021.1.5.>

③ <삭제 2021.1.5.>

④ <삭제 2021.1.5.>

제27조(재임용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재임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②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거부와 그 사유를 함께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 거부를 통지 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 출석등의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④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거나,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제28조(재임용 소청)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재임용 계약체결) ① 총장은 재임용이 확정된 강사에 대하여 임용기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포함),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절차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재임용 기간이 만료된 강사는 신규임용 공개 채용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재임용 절차보장 기간은 신규임용부터 새롭게 기산한다.

제 6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30조(복무 및 의무) ① 강사는 담당교과목 및 교육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업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성적 입력 및 제출
3. 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출결관리 및 휴·보강 관리
4. 담당 교과목 CQI보고서 작성
5.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② 강사의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강사가 우리대학 외 타 기관 등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임용 후 신분변동(전업강사->비전업강사)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신분변동을 수시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강사는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신분보장) 강사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용 기간 중 그 의

사에 반하여 해직, 휴직, 징계,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의 개폐로 인한 처분은 예외로 한다.

제32조(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1항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5.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3조(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 한다.

1. 사망한 때
2.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도달할 때 (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4조(면직) ①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우리대학의 명예 또는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3. 관련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무단결근, 휴직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내 복직원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7조 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

7조 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7장 보수 및 근무조건

제35조(임금) ① 강사의 학기 중 임금은 우리대학교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강의료를 해당학기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당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9.12.21.>

②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은 해당 학기의 실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방학 중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

1. 지급 대상 기간

가. 강의 담당이 예정된 학기의 개시 전 1주일분에 한함

나. 실제 강의를 담당했던 학기의 종료 후 1주일분에 한함

2. 지급액 : 계약으로 정한 주당 시간 수 × 시간당 강의료 지급단가

③ 강사의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계절학기만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퇴직금) 강사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37조(4대보험) ①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8장 보칙

제3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 2항은 2020년 1학기 강사 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사 자격 기준

(단위: 년)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강사	1	1	2	1	2	3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개정 2019.12.21.>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경력년수 환산표

경력내용	환산인정율 (%)	비 고
1.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100%) 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경력(전임교원) 나.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 연구(실험·실습을 포함)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100 100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의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0%)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나.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다.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석·박사과정 포함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마.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100 100 100 100 10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2호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70%) 가.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대학(전문대학포함)에서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경력 1)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70%를 넘지 못함 2)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은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한다.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박사과정 수료자 (석·박사과정 포함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석사과정 수료자 (2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30-70 30-70 70 70 70 70 70 70 7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호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된 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70	대학교원 자격기준

강사 임용 지원서

접수번호

성명			생년 월일			휴대폰		
주소						이메일		
전업 여부	전업() 비전업()		소속 기관			직위		
학력 사항	구분	대학명	학과명		전공	학위종별	학위취득 일자	
	학사							
	석사	학위논문 제목						
	박사	학위논문 제목						
교육 경력 (대학 이상)	기관명		직명(직위)		담당직무	재직기간		
						시작일	종료일	
연구 경력	기관명		직명(직위)		담당직무	재직기간		
						시작일	종료일	
연구 실적 (최근 4년간)	구분	출판사	게재일	저자수	참여 형태	제목		
<p>본인은 귀 대학교 학년도 학기 강사 공채 임용에 응모하고자 임용지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지 원 자 : (인)</p> <p>예수대학교 총장 귀하</p>								

1. 교육·연구경력, 연구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첨부
2. 연구실적 구분은 저서, 역서, 논문 등으로 표기
3. 연구실적 환산은 예수대학교 신규교원임용세칙 제10조 1항에 따름

[별지 제2호 서식]

자기소개서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부	채용분야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1.1.5.>

[별표 3] <개정 2020.6.9.>

공개채용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구분	평가항목	평점 기준	심사방법	평정표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제4조의 강사 임용자격 및 세부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 □ 제출서류 심사 	적격 / 부적격	'적격'일 경우 다음단계 심사 진행	[별지 제4호 서식]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영역의 적합성 □ 학력 □ 대학 강의 경력 	90점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 별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별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 (최근 4년간 대표 연구실적) □ 교과운영계획의 적절성 □ 자기소개서 (교육자적 자질·열정·학부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로서의 정신자세 (교육자로서의 열정 및 발전 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별표 3-1] 예술·체육분야 공연, 전시, 수상 실적 논문 인정 기준 <개정 2023.12.11.>

예술·체육분야 실적		논문 인정 기준		
음악 분야	성악, 연주, 작곡발 표	• 국내외에서 진행한 국제 발표회	SCI급	• 발표자 수에 따라 1인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가
		• 국내에서 진행한 발표회	KCI급	• 발표자 수에 따라 1인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가
	음반, 작곡집	• 해외 전문음반사·출판사 발행 음 반·작곡집	SCI급	• 발표자 수에 따라 1인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가
		• 국내 전문음반사·출판사 발행 음 반·작곡집	KCI급	• 발표자 수에 따라 1인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가
	협연, 출연, 지휘	• 기악곡 협연(전악장), 오페라(오라토 리오) 출연(주연), 관현(합창단)악단 지 휘/전체 프로그램 참여	KCI급	• 주저자급으로 평가
		• 기악곡 협연(부분), 오페라 출연(조 연), 관현(합창단)악단 지휘/부분(2스테 이지 이상) 프로그램 참여	KCI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 오페라(단역) 출연, 관현(합창단)악단 지휘/부분(1스테이지) 프로그램 참여	기타 학술지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반주, 중주	• 프로그램 반주 및 중주/전체	기타 학술지급	• 주저자급으로 평가
		• 프로그램 반주 및 중주/부분	기타 학술지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수상	• 공인된 국제대회에서의 대상	SCI급	• 주저자급으로 평가
		• 공인된 국내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 별상, 전국규모 공모전·대회에서 대상	KCI급	• 주저자급으로 평가
		• 전국규모 공모전, 대회에서 입상	KCI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p>1. 국내·외 공연은 공인된 공연장만 인정한다. ※ 공인된 인증기관(대사관, 문화원, 학·협회, 연맹, 지부, 연주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제 출해야 한다.</p> <p>2. 동일한 작품, 공연의 경우 장소나 기간이 다르더라도 1건으로 인정한다.</p> <p>3. 국내에서 발행한 음반, 작곡집은 한국저작권협회에 신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업체 만 인정한다.</p> <p>4.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은 주최기관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p> <p>※ 증빙서류 : 팸플릿, 현장사진, 공연(대관)확인서, 수상 확인서류 등 해당서류 각 1부</p>				
미술 분야	작품전	• 국내외에서 진행한 국제 전시회	SCI급	• 작품 발표자 수에 따라 1인(개인전) 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 가 (5인 이내의 작품전만 해당)
		• 국내에서 진행한 전시회	KCI급	• 작품 발표자 수에 따라 1인(개인전) 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 가 (5인 이내의 작품전만 해당)
	출 품 , 수 상	• 공인된 전시 초대작가/추천작가 출품	KCI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 공인된 국가기관 혹은 사단법인 협회 전(기획전, 교류전)	KCI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 기타 출품전(회원전, 기획전, 소단체 의 초대작가전, 기타 단체전)	기타 학술지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예술·체육분야 실적		논문 인정 기준		
		•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SCI급	• 주저자급으로 평가
		• 공인된 국내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전국규모 공모전에서 대상	KCI급	• 주저자급으로 평가
		• 전국규모 공모전, 대회에서 입상	KCI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1. 국제전의 경우는 참가국이 3개국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2. 초대 전시회는 기관이나 단체가 초대 또는 기획한 전시회를 의미한다. 3. 개인전은 등록된 국내외 미술관 및 갤러리에서 전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공인된 인증기관(대사관, 문화원, 학·협회, 연맹, 지부, 전시장, 미술관, 화랑 등)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4. 동일한 작품의 전시회는 장소나 기간이 다르더라도 1회만 인정한다. 5.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은 주최기관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증빙서류 : 팸플릿, 현장사진, 전시 확인서, 수상 확인서류 등 해당서류 각 1부				
체육 (무용)	발표회	• 국내외에서 진행한 국제 발표회	SCI급	• 작품 발표자 수에 따라 1인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가
		• 국내에서 진행한 발표회	KCI급	• 작품 발표자 수에 따라 1인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가
	연출, 감독, 안무	• 국내외에서 진행한 국제 국·공립, 민간단체 작품의 연출, 감독, 안무	SCI급	• 연출, 감독, 안무 참여자수에 따라 1인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가
		• 국내에서 진행한 국·공립, 민간단체 작품의 연출, 감독, 안무	KCI급	• 연출, 감독, 안무 참여자수에 따라 1인은 주저자, 2인 이상은 공동저자로 평가
		• 수상작품의 연출, 감독, 안무	기타 학술지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출전 및 수상	• 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거나, 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하였을 때	SCI급	• 주저자급으로 평가
		•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주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주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 등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거나, 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하였을 때	KCI급	• 주저자급으로 평가
		• 전국규모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거나, 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하였을 때	KCI급	• 공동저자급으로 평가
	1. 국내외 공연은 공인된 공연장만 인정한다. ※ 공인된 인증기관(대사관, 문화원, 학·협회, 연맹, 지부, 공연장 등)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작품의 전시회는 장소나 기간이 다르더라도 1회만 인정한다. 3.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증빙서류 : 팸플릿, 현장사진, 공연(대관) 확인서, 수상작품의 연출·감독·안무 확인서류 등 해당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6.9., 2021.8.18. 2023.8.7.>

강사 공개채용 서류 심사표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부	채용분야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 강사 임용예정일 현재, 만 65세 이상자는 본교 강사에 임용될 수 없음

2. 제출서류

서 류 명	제출여부		서 류 명	제출여부	
	○	×		○	×
1. 제출서류 목록 (서식 1)			7. 연구실적 목록 (서식 5)		
2. 강사임용지원서 (서식 2)			8. 연구실적물		
3. 학위증명서			9. 학력 및 경력조회 동의서(서식 6)		
4. 경력 및 재직증명서			10. 개인정보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7)		
5. 담당과목 교과운영계획서 (서식 3)			11.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서식 8)		
6. 자기소개서 (서식 4)			12. E-mail 파일제출 유무		

3. 자격심사 및 적격여부 심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정한 강사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

채용분야 적격여부	심사결과	
	적격	부적격

*단, 간호의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자격기준							심사결과			
							적격	부적격		
법정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교육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직명	강사	1	1	2	1	2	3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6.9., 2021.1.5., 2023.12.11., 2025.1.13.>

강사 공개채용 기초 및 전공심사표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부	채용분야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2.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

평가 항목	심사기준	배 점	위원평점																		
전공영역의 적합성	매우적합 : 30점 적합 : 20점 보통 : 10점	30점																			
학력 (학위)	박사학위수료 이상 : 20점 석사학위 : 15점 ----- * 예술·체육분야인 경우 석사학위수료 이상 : 20점 학사학위 : 15점	20점																			
대학 강의 경력	4년 이상 : 15점 1년 초과 ~ 4년 미만 : 10점 1년 이하 : 5점	15점																			
연구실적 1편 (최근 4년간 대표연구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15%;">주저자 (교신)</th> <th style="width: 15%;">공동저자</th> </tr> </thead> <tbody> <tr> <td>SCI급 (SCOPUS 포함)</td> <td>10</td> <td>8</td> </tr> <tr> <td>KCI급</td> <td>8</td> <td>6</td> </tr> <tr> <td>기타학술지(연구소지 등)</td> <td>6</td> <td>4</td> </tr> <tr> <td>없음</td> <td colspan="2">0</td> </tr> <tr> <td colspan="3">* 예술·체육분야인 경우 공연, 전시, 수상실적 등을 [별표 3-1]에 의거 논문에 준하여 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주저자 (교신)	공동저자	SCI급 (SCOPUS 포함)	10	8	KCI급	8	6	기타학술지(연구소지 등)	6	4	없음	0		* 예술·체육분야인 경우 공연, 전시, 수상실적 등을 [별표 3-1]에 의거 논문에 준하여 인정			10점	
구분	주저자 (교신)	공동저자																			
SCI급 (SCOPUS 포함)	10	8																			
KCI급	8	6																			
기타학술지(연구소지 등)	6	4																			
없음	0																				
* 예술·체육분야인 경우 공연, 전시, 수상실적 등을 [별표 3-1]에 의거 논문에 준하여 인정																					
교과운영계획의 적절성, 교육자적 자질, 학교발전 기여 가능성	우수 : 11~15점 보통 : 6~10점 미흡 : 5점 이하	15점																			
합 계		90점																			

※ 대학 강의 경력

- 대학(원)에서 강의한 경력만을 평가함.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제외)
- 시수에 관계없이 기간으로 산정하며, 해당기간에 2개 대학 이상을 출강하였더라도 기간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학위이수 기간 중 출강하였더라도 대학 강의 경력으로 인정함.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 5-1호 서식] <개정 2023.8.7.>

강사 기초 및 전공심사표

(교과운영계획의 적절성, 교육자적 자질, 학교발전 기여 가능성 평가표)

1. 지원자 인적사항

부서	채용분야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2. 심사기준 및 점수

심사기준		평가점수	평가의견
우수	11점-15점		
보통	6-10점		
미흡	5점 이하		
평가점수			

※ 평가 실 점수 기재 및 평가의견 간략하게 기술

20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8.7.>

강사 임용 면접 심사표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부	채용분야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평가내용	평 점			평가점수	평가의견
	A (10)	B (8)	C (6)		
강사로서의 정신자세 (열정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총점 평균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7호 서식]

강사 임용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

지원자 성명	심사평정결과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 점수 (100점 만점)	득점 순위
	서류심사 (적격·부적격)	기초 및 전공심사 (90점 만점)	면접심사 (10점 만점)		

강사 임용규정 제19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심사위원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1.8.18.>

강사 임용 계약서

예수대학교 강사로 임용함에 있어 예수대학교 총장을 “갑”, 을 “을” 이라 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 아래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갑” 예수대학교 총장
-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2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강사 임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 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임용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2. 강의개설학부 :
3. 담당교과목명 :
4. 학기별 주당 담당시간

구분	담당과목(담당시간)		비 고
	1학기	2학기	
수업 (이론)			
수업 (실습)			
합 계			

* 학기별 시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임금) “갑”은 예수대학교 「책임시수 및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1. 학기 중 임금
 - 가. 구성항목:
 - 나. 계산방법:
 - 다. 지급방법:
2. 방학 중 임금
 - 가. 구성항목:
 - 나. 계산방법:
 - 다. 지급방법:

제4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을 담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9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별지 제 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24조에 의거하여 예수대학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보유·제공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겸임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제공할 것이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목적

- 겸임교원초빙 심사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
- 겸임교원초빙관련 채용심사 및 지원자 사후관리에 이용 및 제공
- 기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 (법률근거, 경력 및 학력조회 등을 위한 기관제공)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 개인민감정보 : 종교(세례유무)
- 개인속성정보 : 생년월일, 전화번호.(집, 직장, 핸드폰), 주소, 이메일, 출신학교, 학위, 성적, 경력사항, 자격·면허, 연구실적 등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절차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 하며, 업무완료 후 파기 (단, 채용된 인원에 한해 영구보존)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예수대학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전주완산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0.6.9.><개정 2023.1.10.>

강사 재임용 평가 심사표

평가대상기간	소 속	성 명	담당교과목
20 - 20			

평가항목	평점기준	배점	취득점수
수업계획서 기간 내 입력	미입력 강좌당 -3점	10점	
수업일수 준수 및 출결 관리	미준수 1건당 -3점	10점	
휴강 및 보강 준수	미준수 1건당 -3점	10점	
수업평가 점수	환산점수 = 실제점수*0.6	60점	
CQI보고서	제 출 10점 미제출 0점	10점	

20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0.6.9.>

강사 재임용 거부 사유서

1. 소 속 : 간호학부
2. 담당교과목 :
3. 재임용 심사 대상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재직기간	비고

4. 재임용 거부 조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가. 재임용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 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목이 폐지(예정)된 경우
 - 다. 강사임용규정 제7조에 해당되는 경우

5. 재임용 거부 사유

상기와 같이 강사 재임용 심사결과 재임용 거부 조건에 해당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의·의견 진술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 거부를 최종 결정하였기에 이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교원인사위원장

서명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